

동두천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-377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02. 3.
제 출 자 : 동두천시장

☐ 제안이유

- 윤락행위등방지법에 근거하여 배치된 여성복지상담원과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배치된 아동복지지도원의 일반직(사회복지직) 전환에 따라 이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
☐ 주요골자

가. 일반직으로 전환된 별정직 직명을 삭제함(안 제3조)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동두천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동두천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별정직지방공무원의 지정) (생략) 1. (생략) 2. <u>아동복지지도원</u> 3. <u>여성복지상담사</u> 4 ~ 5. (생략)	제3조(별정직지방공무원의 지정)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<u>(삭제)</u> <u>(삭제)</u> 4 ~ 5. (현행과 같음)